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 지원하여 왔으나 운용금액이 소액이고 서울시 재정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조례폐지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 ※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생략)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생략)

□ 예산조치: '99예산에 반영 예정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동수)

○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92. 10. 23. 설치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서울시에서 총 5억원을 출연하여 47농가에 4억 7,000만원(평균 1농가당 1천만원)을 융자하였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5%로서 '98. 10월말 현재 평가잔액은 2억 2,700만원이고 예금이자 1,26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 동 기금은 운용금액이 소액이고 서울시 재정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폐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잔액(예금이자 포함)과 융자금 상환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일면 기금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의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 당초 기금설치 목적인 도시형 농업발전을 주도할 영농주 양성과 개방화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중단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2억 6,000만원(농촌지도자 영농자금융자 2억원, 농촌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교육행정지원 6,000만원)을 '99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4. 질의·답변: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일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관리한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1999년 3월 남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검침하는 3월 남기분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별표 2】

가. 수도요금 유효표(1개월 기준)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 가(원)
13	870	가정용	0~30이하	270
20	2,400		30초과~40이하	460
25	4,200		40초과~50이하	540
32	7,600		50초과	770
40	12,900	대 중 목욕탕용	0~500이하	230
50	20,500		500초과~2,000이하	270
65	31,300		2,000초과	360
75	42,200	업무용	0~50이하	400
100	72,000		50초과~300이하	520
125	115,000	영업용	300초과	590
150	157,000		0~100이하	690
200	223,000		100초과~200이하	830
250	302,000		200초과~300이하	960
300	375,000		300초과~1,000이하	1,020
350	471,000		1,000초과~2,000이하	1,170
400이상	513,000		2,000초과~3,000이하	1,210
			3,000초과	1,240

단, 세대당 월 10㎡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요금은 1㎡당 190원으로 한다.

나. 급수종별 구분표

<p>(1) 가정용</p> <p>(가)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p> <p>(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p> <p>(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p> <p>(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p> <p>(마) 공용급수전</p> <p>(바)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p> <p>(사) 기숙사</p> <p>(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p> <p>(2) 대중목욕탕용</p> <p>(가)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p> <p>(3) 업무용</p> <p>(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p>	<p>(나) 사설소화전</p> <p>(다)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p> <p>(바) 학교</p> <p>(사) 정당</p> <p>(아) 병영</p> <p>(자) 신문사, 방송국</p> <p>(차)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p> <p>(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중 업무용으로 원하는 시설</p> <p>(타)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p> <p>(파) 급수탐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p> <p>(하)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p> <p>(4) 영업용(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제외)</p> <p>(가) 식품접객업</p>
--	---

<p>(나) 공연장 (다) 숙박업 (라) 유기장, 오락장, 노래장 (마)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바)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사) 음식점 (아) 학원(독서실·고시원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자) 사진현상소 (차)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제외) (카)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타) 발전소 (파) 이발소(미장원 제외) (하)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거) 화훼, 식목업 (너)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더) 도살장, 정육점 (러) 양조업, 제빙업, 제분업(방앗간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화공약품</p>	<p>품·화장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머)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버)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서)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어)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저)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 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효율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쳐)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커)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효율 적용) (터)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퍼)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허)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고)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p>
---	---

<p>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p> <p>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1998.12. 도시관리위원회</p> <p>1. 경 과</p> <p>○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제출일자 : 1998.11.11 나.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p>	<p>○회부일자 : 1998.11.17</p> <p>다. 상정일자</p> <p>○제16회 정기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98.12.15)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주택국장 : 양 갑)</p> <p>가. 제안이유</p> <p>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p>○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 삭제(안 제2조의2)</p> <p>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p> <p>-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직접 점유 또는 사용하는 토지</p>
---	---